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0누449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 A조합

소송대리인 [redacted]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시장

제 1 심 판 결 [redacted]법원 2020. 5. 29. 선고 2019구합54317 판결

변 론 종 결 2021. 3. 17.

판 결 선 고 2021. 4. 14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1. 9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 등

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,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고,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(갑 제23 내지 25호증)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(그 별지2 '관련 법령'을 포함하되, '4. 결론' 부분은 제외)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○ 6쪽 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⑤ 원고는, 할인마트의 인도가 완료된 2016. 5. 23. 이후부터는 원고가 단독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였고,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이므로,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규정한 1년 이내에 고유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. 5. 23.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차장 부분을 본점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, 원고가 2016. 5. 23. 이 사건 건물 중 할인마트 부분의 인도가 완료되자,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6. 6. 30.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, 같은 해 9. 2. 철거 및 기초 보강공사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2016. 5. 23.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차장 부분을 본점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.』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6-08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. [redacted]도 [redacted]시 L 대 363㎡
2. [redacted]도 [redacted]시 M 대 1262㎡
3. [redacted]도 [redacted]시 N 전 113㎡
4. [redacted]도 [redacted]시 N, L, M 위 지상

 (현황 N, O, P)

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
 1층 78.12㎡

 2층 78.12㎡

 제시외 4-1 보일러실 벽체이용벽돌조 1층소재 1.68㎡

 4-2 계단실 등 벽돌조 슬래브지붕 옥상 소재 12.5㎡
5. [redacted]도 [redacted]시 O 대 88㎡
6. [redacted]도 [redacted]시 P 전 70㎡
7. [redacted]도 [redacted]시 Q 전 615㎡
8. [redacted]도 [redacted]시 L 1동호, M 위 지상

 1동호

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1,2종근린생활시설

 1층 953.96㎡

 2층 953.96㎡

 제시외 8-1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3층 496.35㎡

 8-2 창고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1층소재 56.2㎡

 8-3 현관로비 샷시조 1층소재 4.2㎡

 8-4 물탱크실 철골조 옥탑소재 54㎡, 끝.